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5. 6. 20(월) 09:30

심 사 보 고 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5. 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6. 10
- 다. 의안번호 : 제 2005 - 37호, 38호
- 라. 상정일자 : 2005. 6. 1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이월액)
합 계	325,373,149	327,177,175	222,312,861	104,864,314
일 반 회 계	296,647,226	298,762,555	210,029,892	88,732,663
특 별 회 계	28,725,923	28,414,620	12,282,969	16,131,651

-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 수납액은 327,177,175천원이며
 - 지출액은 222,312,861천원으로
 - 차인잔액(이월액)은 104,864,314천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중에는

- 명 시 이 월 : 212건 60,892,614천원
- 사 고 이 월 : 113건 12,076,409천원
- 계속비 이월 : 18건 14,258,636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 : 1,096,531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6,540,124천원 이다.

2)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납반환액	미수납액
합 계	325,373,149	332,412,328	327,177,175	141,694	5,235,153
일반회계	296,647,226	302,215,789	298,762,555	132,329	3,453,234
특별회계	28,725,923	30,196,539	28,414,620	9,365	1,781,919

- 총수납액은 327,177,175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32,412,328천원 대비 98.4%이며, 미수납액은 5,235,153천원 으로 징수결정액의 1.6%임
- 일반회계 수납액은 298,762,55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02,215,789천원대비 98.9%이며 미수납액은 3,453,234천원으로 수납액의 1.1%임
- 특별회계 수납액은 28,414,620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0,196,539천원 대비 94.1%이며 미수납액은 1,781,919천원으로 총수납액의 5.9%임

3)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02,728,342	325,373,149	222,312,861	88,227,659	14,832,629
일반회계	180,120,286	296,647,226	210,029,892	78,446,409	8,170,925
특별회계	22,608,056	28,725,923	12,282,969	9,781,250	6,661,704

- 총지출액은 222,312,861천원으로서 예산현액 325,373,149천원의 68.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8,227,65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7.1%이며, 불용액 14,832,629천원은 예산현액의 4.6%임.
- 일반회계 지출액은 210,029,892천원으로 예산현액 296,647,226천원대비 70.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446,40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6.4%, 불용액은 8,170,92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8%임
- 특별회계 지출액은 12,282,96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28,725,923천원의 42.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781,250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4.1%이며, 불용액 6,661,704천원은 예산현액의 23.2%임

4) 계속비 결산

(단위 : 천원)

재 원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고보조	복합문화단지조성		250,000	250,000		250,000	
국도비보조	거창도서관건립		3,257,531	3,257,531	974,817	2,282,714	
국고보조	거창스포츠파크	1,000,000	4,050,660	5,050,660	218,713	4,831,947	
국고보조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사업		2,782,558	2,782,558	2,776,460		6,098
국도비보조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1,819,351	1,100,000	2,919,351	907,394	2,011,957	
도비보조	읍민생활공원	2,000,000	2,000,000	4,000,000	83,610	3,916,390	
국고보조	거창읍청사신축	2,000,000		2,000,000	34,372	1,965,628	
합 계		6,819,351	13,440,749	20,260,100	4,995,366	15,258,636	6,098

5)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6,290,662	3,041,225	979,736	805,998	1,899,443	335,784
일반회계	4,581,822	3,041,225	979,736	805,998	1,899,443	335,784
특별회계	1,708,840					

○ 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041,225	531,391	504,625	959,044	334,651
행정관리	성과상여금	73,924	73,924	73,924		
행정관리	군수.군의원 보궐선거	381,237	54,143	54,143		327,094
사회보장	태풍"메기"피해 이재민구호	105	105	105		
관광진흥	태풍"메기"피해 문화시설및관광지복구	4,477	1,870	1,250	3,227	
농업소득 관리	태풍"메기"피해 재해보상금(2건)	3,401	3,180	3,180		221
축수산관리	태풍"메기"피해 재해보상금(2건)	2,137	2,129	2,129		8
유통지원	태풍"메기"피해 재해보상금	550	425	425		125
산림관리	태풍"메기"피해 사유림복구(사방)	124,441	6,239	6,239	118,202	
산림보호	태풍"메기"피해 사유림복구(임도)	24,888	1,500	1,500	23,388	
녹지공원	밤 흑별피해 긴급방제	40,099	32,896	32,896		7,203
농업기반	태풍"메기"피해 수리시설비	339,751	70,595	44,449	295,302	
건설행정	태풍"메기"피해 소규모시설복구	803,310	284,385	284,385	518,925	

구 분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도로관리	태풍"메기"피해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사업	254,447	150,586	9,407	245,040	
하천및 재난예방	태풍"메기"피해 하천수해복구	949,058	288,465	288,465	659,460	1,133
건축행정	태풍"메기"피해 주택 복구비	2,607	2,607		2,607	
상하수관리	태풍"메기"피해 상하수도 복구	36,793	6,687	3,501	33,292	

6) 기금결산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잔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잔액
		수 납 액	지 출 액	
합 계	1,869,527	475,380	37,653	2,307,254
거창 아립예술제 기금	310,005	10,226	10,227	310,004
거창군체육회진흥기금	16,016	7,321		23,337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236,913	70,328	16,200	291,041
거창군 노인복지 기금	670,380	125,512		795,892
거창군 여성발전 기금	130,000	135,882		265,882
거창군 재해대책 기금	388,104	74,309		462,413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	100,379	20,602		120,981
거창군 식품진흥 기금	17,730	31,200	11,226	37,704

7) 채권액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년 도 발 생 액	당 해 년 도 소 멸 액	당해년도말 잔 액
합 계		2,317,619	798,244	1,264,563	1,851,300
일 반 회 계		333,076	60,075	178,000	215,151
특 별 회 계	소 계	1,984,543	738,169	1,086,563	1,636,149
	주 택 사 업	210,927	65	58,931	152,061
	농업발전기금	135,000		75,000	60,000
	저소득주민	117,086	25,972	32,934	110,124
	농 공 단 지	1,521,530	712,132	919,698	1,313,964

8) 채무액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년 도 발 생 액	당 해 년 도 소 멸 액	당해년도말 잔 액
합 계		15,520,281	1,492,000	1,189,095	15,823,186
일 반 회 계		10,284,401		31,600	10,252,801
특 별 회 계	소 계	5,235,880	1,492,000	1,157,495	5,570,385
	상 수 도	2,629,200	1,492,000	302,400	3,818,800
	주택사업	206,680		55,095	151,585
	농공단지	2,400,000		800,000	1,600,000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상환자원별로 분류하면 지방비 부담은 10,000,000천 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이 5,823,186천원임.

3. 결산검사 결과

가. 총 평

2004년도 세입·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 세입 : 327,177,175천원
- 세출 : 222,312,861천원
- 이월액(잔액) : 104,864,314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60,892,614천원, 사고이월 12,076,409천원, 계속비이월 14,258,63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96,53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40,124천원임.

○ 2004년도 결산면에서 보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과 건전 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에서 예산을 과다책정하여 예산현액의 27.1%인 88,227,659천원이 이월되고 14,832,62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특징과 지역 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품목별 투입 중심의 예산구조에서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별 예산 편성 구조로 변경,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입면에서는 군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80,169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86%이며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등 세입 확보 노력 강화, 지역부족자원개발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요망됨.

○ 세출면에서는 지방재정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집행하였고, 각 항목에서 383,223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어느 정도 예산집행의 행정 효과를 거두었으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소모성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요구됨.

○ 부문별로 보면

- 각종 사업면에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고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하고 사업추진 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협의하여 시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통경비가 각

사업간에 균형을 유지토록 배분하여야 할 것임.

- 관서운영비는 조직운영에 소용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간담회, 협의회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임.
 - 경상사업비 중 각종 기념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는 예산을 일부만 보조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각종 신문, 잡지 구입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중복 구독이 없도록 할 것으로 사료됨.
- 채권액인 융자사업은 융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군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회수에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조사업은 산업진흥이나 특정사업 장려, 행정목적 수행 등 공익적 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나 특정분야,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 등은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요구되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정한 기준없이 POOL예산과 실과예산에서 중복지원되고 있어 적절한 지침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되며 일부단체는 사업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행정지도가 요구됨.

나. 미흡한 사업

- 농업경쟁력 재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오미자 기반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사업이 부진하여 행정적 자원이 요망됨.
- 거창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미흡
- 생활 복지 실현으로 추진하는 군립 치매요양병원 건립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 추진 미흡
-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개발 수요창출로 군민소득증대와 연결되도록 관광객 유입 홍보 미흡.

4. 질의 및 답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5. 5. 11 ~ 5. 30(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 재정법, 거창군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고질채납자에 대한 징수소홀로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과 친절한 홍보로 자진 납부토록 하여야 할 것임
-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 과다 발생으로 예산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평생교육학습운영, 의용소방대지원경비등은 향후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각종 사업 시행시 무상증여 재산에 대한 등기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수년전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재산권 분쟁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농업발전 기금 등 농업인의 수혜가 가는 기금에서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처럼 적정수준의 이자율로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함
-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